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70
----------	------

2016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03일
- 라. 상정결과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장애인 체육 전문단체인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 종 목 :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 인 원 : 총23명(휠체어농구 12, 탁구 5, 휠체어컬링 6)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1.1.~2019.12.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소요예산(안) : 1,050,000천원(2017년 기준)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16.8.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3.~2012.12.(2년 10개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2차 : 2013.1.~2014.12. (2년, 재계약),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 장애인탁구팀 : 2012.7.~2014.12.(신설, 2년 6개월)
 - 3차 : 2015.1.~2016.12. (2년, 재계약),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여부
 - '16. 9.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적정, 조직담당관)
 - '16. 9. : 적격자심의위원회(적정, 체육정책과)
 - '16. 1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조직담당관)

(4). 주요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
- 위탁사무 내용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부 설치 등)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

○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중 휠체어농구팀, 장애인 탁구팀, 휠체어컬링팀 사무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3회, 수탁기간 6년으로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 3회, 총 수탁기간 : 6년 10개월

- 2010.3.~2012.12. : 장애인체육회 운영위탁(1차, 2년10개월)
- 2013.1.~2014.12. : 장애인체육회 운영위탁(2차, 2년)
- 2015.1.~2016.12. : 장애인체육회 운영위탁(3차, 2년)

○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¹⁾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 법 제9조에 의거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으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탁운영 중으로 2010년 3월 휠체어농구팀 창단, 2012년 7월 탁구팀 창단, 2016년 8월 컬링팀이 창단을 하여 총 23명(감독 3명, 선수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구 분	휠체어농구팀	장애인탁구팀	휠체어컬링팀
인 원	12명(감독, 코치, 선수10)	5명(감독, 선수4)	6명(감독, 선수5)
창 단 일	2010. 3. 1.	2012. 7. 1.	2016. 8. 1.
위탁기간	2015.1.1.~2016.12.31.	2015.1.1.~2016.12.31.	2016.8.1.~2016.12.31.
소요예산	610백만원	290백만원	150백만원(국비 150백만원 별도)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위탁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서

2015년과 2016년의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입상 성과를 살펴보면, 휠체어농구팀의 경우, 2015년 국내대회 6회, 국제대회 1회 출전하여 국내대회 4회, 국제대회 1회를 입상하였고 이에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6년 국내대회 5회, 국제대회 1회 출전하여 전 대회 입상으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음.

탁구팀의 경우 2015년 국내대회 8회, 국제대회 5회 출전하여 전 대회 입상으로 금메달 19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9개 획득, 2016년 국내대회 2회, 국제대회 3회 출전하여 전 대회 입상으로 금메달 1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음.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각종 국내의 대회출전 현황>

구분	종목	출전대회수	입상대회 수	입상성적			비고
				금	은	동	
2015	휠체어농구	국내6,국제1	국내4,국제1	1	1	3	
	탁구	국내8,국제5	국내8,국제5	19	14	9	
2016	휠체어농구	국내5국제1	국내5국제1	3	3	-	
	탁구	국내2국제3	국내2국제3	12	6	3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2010년 창단이후 2012년부터 패럴림픽에 출전했으며, 2012년 런던 패럴림픽의 경우, 참가선수 총 22명 중 탁구종목에 4명(지도자1, 선수3)이 참가하여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 2016년 리우 패럴림픽 역시 총 9명 중 5명(지도자1, 선수4)이 탁구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음.

- 또한 올림픽으로 높아진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생활스포츠로 정착시키고 서울시 소속 엘리트 선수들의 종목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스포츠 축제를 하고자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스포츠재능나눔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스포츠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도래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조직담당관(16.8.19.)에서 외부전문평가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87.74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타 기관 및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수팀 창단 및 장애인 선수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관련 실적을 창출하고 있고, 선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장소 및 숙소시설의 무장애화를 실시한 점에 대한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받았으며,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위원회(참고자료1)의 경우, 지역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으나, 위원들이 대

부분 업계의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 수렴을 위해 타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음.

<'16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구 분	총 점	평가지표			가·감점	비 고
		공통사무 (35점)	개별사무 (50점)	사용자 만족도 (15점)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7.74	30.94	45.17	11.63	0	

또한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16.9.9. 실시한 결과 적격자 심의는 100점 만점에 91.5점으로 참석 심의위원 총 4명 전원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와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해 '적격'심의를 함.

<서울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재계약 적격자 심의항목별 결과>

구 분	계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평가배점	100점	30점	50점	20점
평균점수	91.5점	27.75점	46점	17.75점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완전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의 위탁사무로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운영의 지가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보다는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보조사업 전환시 종목선정 등의 권한이 사무처로 이관됨에 따라 종목폐지 및 변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고용불안이 고조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운영함으로써 선수들이 서울시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는 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데 있어 거의 유일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인력의 경우 선수 출신과 장애인체육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참고자료2)으로, 업무경력과 현장경험 등을 고려할 때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별도의 추가인력 및 예산의 수반 없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휠체어농구팀 및 탁구팀 훈련장 및 합숙소 관련 비용(참고자료3)을 최소화 하는데도 노력하고 있고, 장비구입에 있어서도 한정된 시장의 특성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

으나 다만, 지나친 비용절감으로 인해 기본 목표에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종목의 운영은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종목의 확대는 모든 장애인 선수들의 염원이며, 더 나아가 서울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비장애인종목의 경우 20개 종목, 22팀에 선수 규모가 161명, 예산 규모가 136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종목의 3개팀, 23명의 선수 정원, 10억 5천만원의 예산 규모는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참고자료 1.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주요기능
 -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규정 승인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지도자, 선수) 추천 및 심의·승인
 - 경기인(지도자, 선수) 평가 및 등급 승인
 - 기타 서울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위원임기 : 2년

○ 위원 명단

순번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곽해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 원	강현길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부장	
3	위 원	김임연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 위원	
4	위 원	김태수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5	위 원	양현철	전)서울특별시장애인탁구협회 부회장 서울시청 여자탁구팀 감독	
6	위 원	이정훈	서울특별시청 체육복지팀장	
7	위 원	최영호	서울특별시장애인농구협회 전무이사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등급분류사	

참고자료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직원 경력 현황

부서	성명 및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세부내용
전문체육팀	권익태 (201103 ~ 현재)	팀장	전문체육팀 총괄	· 전문체육 사업 및 운영 총괄
	이명선 (200706 ~ 현재)	차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 총괄 - 직장운동경기부 종합운영계획 및 업무보고 - 장애인스포츠탄 운영위원회 개최업무 - 서울시의회 요구자료 등 관련업무 - 선수 영입계약, 합숙소, 차량운영, 예산지출 등 - 선수단 훈련지원 (훈련장, 전지훈련 장비, 피복, 용품, 의무비 등) - 선수단 대회출전 (출전비, 격려금, 보상금, 전력분석 등)
총무기획팀	김동인 (201401 ~ 현재)	팀장	인사회계관리	· 회계인사 실무지원
	박소라 (201302 ~ 현재)	담당	회계관리	· 급여지급, 4대보험 관리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및 장비구입 현황

○ 총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예산	증감	증감률	증감사유
2014년	870,000	-	-	-
2015년	900,000	30,000	3%증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반영
2016년	1,050,000	150,000	14%증	컬링팀 신설에 따른 증액

○ 종목별내역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휠체어농구	2014년	610,000	-	-	
	2015년	610,000	-	-	
	2016년	610,000	-	-	
장애인탁구	2014년	260,000	-	-	
	2015년	290,000	30,000	10% 증	
	2016년	290,000	-	-	
휠체어컬링	2016년	150,000	150,000	-	신규창단

○ 장비구입 현황(소모품 제외)

(단위:천원)

연도별		증감	증감률	내역
2014년	16,233	-		농구용(경기용) 휠체어, 컴퓨터 등
2015년	18,000	1,767	9%증	농구용 휠체어 3
2016년	12,863	△5,137	40%감	농구용 휠체어 등

○ 합숙소 현황

구분	연도	사용시설	사용시설 내용	월사용금액	증감률
휠체어 농구	2014	정립회관 (서울 광진구)	체육관4층(기숙사 4실, 화장실), 체육관3층(체육관, 휠체어창고) 전기사용료 포함	월2,300천원	
	2015	정립회관 (서울 광진구)	체육관4층(기숙사 4실, 화장실), 체육관3층(체육관, 휠체어창고) 전기사용료 포함	월2,300천원	전년대비동
	2016	정립회관 (서울 광진구)	체육관4층(기숙사 4실, 화장실), 체육관3층(체육관, 휠체어창고) 전기사용료 포함	월2,800천원	전년대비 18%증
장애인 탁구	2014	코리아탁구체육관 (서울 강동구)	체육시설(탁구대2면, 연습장), 일반휴게실, 샤워실, 창고, 지정주차장(총4대)	월1,300천원	
	2015.1 ~2016.2	코리아탁구체육관 (서울 강동구)	체육시설(탁구대4면, 연습장), 휴게실(합숙소), 샤워실, 창고, 지정주차장, 전기사용료합숙시주야사용	월1,930천원	전년대비 30%증
	2016.3~	서부재활체육센터 (서울 은평구)	체육시설(탁구대4면, 연습장), 기숙시설 외 부대시설	월2,000천원	전년대비 3%증
휠체어 컬링	2016	태릉컬링장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컬링장) 외 대기실, 락커룸	시간당 25,000원	

※ 휠체어농구는 3년 연속 정립회관을 사용중이며, 월사용금액 인상에 대한 시설측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나 해당시설과의 조율을 통해 사용료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장애인탁구가 사용해오던 코리아탁구체육관 시설이 폐쇄되어 서부재활센터와 기존 사용료 수준으로 시설 사용 협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70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청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 나.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장애인 체육 전문단체인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 종 목 :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 인 원 : 총23명(휠체어농구 12, 탁구 5, 휠체어컬링 6)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1.1.~2019.12.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소요예산(안) : 1,050,000천원(2017년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16.8.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3.~2012.12.(2년 10개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2차 : 2013.1.~2014.12. (2년, 재계약),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 장애인탁구팀 : 2012.7.~2014.12.(신설, 2년 6개월)
 - 3차 : 2015.1.~2016.12. (2년, 재계약),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여부
 - '16. 9.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적정, 조직담당관)

- '16. 9. : 적격자심의위원회(적정, 체육정책과)
- '16. 1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조직담당관)

라. 주요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

○ 위탁사무 내용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부 설치 등)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

○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 백민영(☎2133-2698)